

2008. 09. 04(목)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8.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8. 25.

2. 개정이유

7 ~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7. 12. 31.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을 적용하고, 2008. 1. 1.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7 ~ 10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군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조정(안 제15조 2)
: 전방조종자동차를 2008년부터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과세
- 2007. 12. 31. 이전 등록 차량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 : 65,000원

- 2008. 1. 1.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은 100분의 33을 경감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96조의5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08. 6. 20 ~ 7. 10)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감면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함으로써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으로
-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영업용	
배 기 량	시시당세액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본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2 \leq n \leq 12$)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
20,000원	100,000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의안번호 제2008 - 38호>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8. 2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8. 28.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08년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선정계획에 응모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프장 규모 : 9홀 규모(325,000m², 가조면 도리 일원)
- 사업기간 : 2009 ~ 2013년까지(5년간)
- 사업방식 : 지자체 토지제공, 공단건설(인허가 포함) 및 운영
 - ※ 시설 : 조성 후 즉시 지자체 기부체납
- 사업비(추정) : 210억원 정도(공단 140억원, 군비 70억원)
 - ※ 공단에서 150억원까지 투자

4. 법적근거

-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008년 후보지 선정계획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008년 후보지 선정계획에 의거 우리 거창군이 골프장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추천 신청서 제출서류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공에 대한 의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임.

- 이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최대 150억원 한도 내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투자비 회수 시까지로 한정하고, 원금을 회수 한 후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사업임.
-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중에서 총투자비를 20년간

균분한 금액만 공단이 매년 회수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방 자치단체 수익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 우리 군 사업계획서 Ⅱ. 사업타당성 분석 중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 골프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경상남도 및 1시간 이내 골프장을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34개소, 건설 중 6개소 등 총 40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2014년 1일 평균 골프장 이용객에 비하여 현재 골프장 40개소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9홀 골프장 5개소 정도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대중골프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하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사업계획서에서 분석한 골프장 40개소 외에 경남 도내에 현재
 - ⇒ 건설 중인 골프장이 함양, 창녕, 의령, 밀양 등 11개소
 - ⇒ 인가 준비 중인 골프장이 의령, 함양 등 9개소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것을 볼 때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2014년에 43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이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도내 및 인근의 골프장이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 초과함으로 골프장 건립의 입지적 여건, 골프인구의 수요분석, 예산투자규모,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세한 검토 후 동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골프장 현황

(2008. 6. 25. 현재)

□ 운영중 : 15개소(회원 12, 대중 3)

골프장명	홀수	면적 (m ²)	조성일자 (승인일자)	운영자	위치	비고
창원cc	18	1,048,959	'84. 9.21 ('82.10.12)	(주)창원컨트리 클럽 박 권 주	창원시 봉림동 산50	
진주cc	18	1,068,481	'96.11.26 ('94. 3.23)	진주개발(주) 이 승 관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산1번지	
용원cc	27	1,635,886	'91.11. 8 ('88.11. 8)	용원개발(주) 김 효 수	진해시 용원동 산39	
가야cc	45	2,822,471	'88. 6.25 ('85. 1.28)	가야개발(주) 권 두 철	김해시 삼방동 산1	
가야cc	대중 9홀	164,773	'05. 8.12 ('02. 4.16)	가야개발(주) 권 두 철	김해시 삼방동 7-1	
김해 정산cc	27	1,514,206	'05.11. 3 ('03. 5.17)	정산개발(주) 정 승 영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80	
통도cc	36	2,198,232	'85.12.20 ('82. 4.21)	(주)동일리조트 김 은 수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233	
동부산cc	27	1,448,364	'97.12.31 ('90. 6.21)	(주)동부산컨트리 클럽 최성필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13	
에이원cc	27	1,680,668	'99. 5.14 ('90.11. 7)	에이원컨트리클럽(주) 최 주 완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산1	
에덴밸리 cc	18	920,431	'06. 5. 3 ('98. 8.25)	신세계관광개발(주) 배 진 원	양산시 어곡동 산489-1	
레이크힐 스함안cc	18	786,500	'06. 7. 7 ('05.1. 28)	(주)레이크힐스함안 이 강 용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산108	
부곡cc	18	942,431	'91. 1.11 ('87. 6.17)	현일개발(주) 배 영 환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산39	
힐튼남해 c.c	대중 9홀	378,840	'06. 11.16 ('05. 3.23)	에머슨퍼시픽(주) 이 만 규	남해군 남면 덕월리 311-1	
힐튼남해 gc	대중 9홀	377,429	'06. 11.16 ('05. 3.23)	(주)청송 한 청 수	남해군 남면 평산리 482-1	
아델 스코트cc	회원 27홀	1,399,432	'07. 9. 6 ('06.1.24)	해인레저산업(주) 김 중 현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산105	

□ 건설 중 : 15개소(회원8, 대중7)

골프장명	홀수	면적 (㎡)	조성일자 (승인일자)	사업자	위치	공정 (%)
스카이힐 김해cc	회원 18홀	1,028,255	- (‘05.12.30)	(주)롯데산업 김수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산50	90
리더스 컨트리클럽	대중 27홀	1,302,924	- (‘06. 6.26)	(주)리더스컨트리 클럽 이삼영	밀양시 황성동 산33	95
의령 컨트리클럽	대중 12홀	564,873	- (‘06. 7.26)	(주)의령개발 강석배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 141	-
로이젠 골프장	회원 18홀	908,973	- (‘06. 11.21)	(주)로이젠 오원근	거제시 장목면 구영, 송진포리	5
의령친환경 대중골프장	대중 9홀	238,838	- (‘07. 2. 15)	의령군 (특구지정)	의령군 의령읍 만천, 대신리	95
양산 컨트리클럽	회원 27홀	1,591,730	- (‘07. 6. 20)	(주)양산농장개발 양정식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54
계성·장마 골프장	회원 18홀	1,008,136	- (‘07. 9. 19)	(주)동훈 김점동	창녕군 장마면 계성면	5
계성·장마 골프장	대중 18홀	1,004,864	- (‘07. 9. 19)	(주)동훈 김점동	창녕군 장마면 계성면	5
함양리조트	회원 18홀	1,033,577	- (‘08. 1. 9)	(주)함양리조트 조일권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3
타니 컨트리클럽	회원 27홀	1,225,764	- (‘08. 2. 21)	타니골프앤리조트 (주) 김성수	사천시 곤양면 가회리	5
타니 컨트리클럽	대중 9홀	427,048	- (‘08. 2. 21)	타니골프앤리조트 (주) 김성수	사천시 곤양면 가회리	5
서포골프장	회원 27홀	1,564,852	- (‘08. 3. 6)	사천리조트(주) 강대신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산 20	5
거창 컨트리클럽	회원 18홀	1,231,869	- (‘08. 3. 13)	장영건설산업(주) 박제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 13	3
거창 컨트리클럽	대중 9홀	611,434	- (‘08. 3. 13)	장영건설산업(주) 박제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 13	3
알프스 컨트리클럽	대중 18홀	984,654	- (‘08. 4. 30)	밀양알프스 컨트리(주) 이상동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산 15	

□ 인·허가 준비 중 : 9개소(회원 4, 대중5)

시·군	골프장명	위 치	홀수	면 적 (m ²)	사 업 자	추진상황
밀양	사포 골프장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대중 9홀	298,100	(주)사포개발 임경주	실시계획인가 신청
거제	장목 골프장	거제시 장목면 구영, 송진포	대중 9	242,000	대우건설(주)	실시계획수립중
양산	다이아몬드 골프장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회원18 대중6	1,291,000	다이아몬드 컨트리클럽(주)	실시계획인가 신청
고성	당항포 골프장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회원27	1,289,300	(주)당항포 관광개발	사업승인 신청
	공룡 골프장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대중 9	178,125	(주)가산 김철희	실시계획수립중
남해	성산골프장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대중9	321,795	남해군수	실시계획수립중
하동	진교,양보 골프장	하동군 진교, 양보면	회원 18홀	1,369,000	(주)네오이미지 전춘식	환경영향평가중 실시계획수립중
	하동스파 리조트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대중 18홀	788,735	(주)한려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중 실시계획수립중
함양	다곡 골프장	함양군 서하면,지곡면	회원36	2,380,000	(주)도시와 사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